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08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강승규·박상웅·구자근
고동진·김미애·박준태
조정태·신동욱·곽규택
조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역대급 폭우, 돌발성 범람 등이 빈발하며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기존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정비 및 준설을 국가·지방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적·계획적 대응이 어렵고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퇴적물이 누적된 중소하천, 도심하천, 지류 등은 유량 저하와 유속 정체로 인해 폭우 시 범람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부담과 예산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실정임.

이에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한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해가 반복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제5조)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하천 정비·준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함.

나.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정비(안 제6조)

환경부장관은 침수위험 또는 반복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천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고, 하천관리청이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정기적 준설의무(안 제7조)

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 하천준설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하도록 함.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이나 지역의 침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유량 및 수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하천의 정비·준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 정비”란 하천의 범람과 이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고, 하천의 유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의 형태 및 기능을 개선하는 공사 또는 조치를 말한다.
2. “하천 준설”이란 하천 바닥에 퇴적된 토사·부유물, 하천의 흐름에 방해되는 나무·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하천의 흐름과 수위를 안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우선정비대상하천”이란 폭우·홍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반복적 침수피해가 발생한 구간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의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하천 구간을 말한다.
4. “하천관리청”이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정비·준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하천의 정비 및 준설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보다 완화된 특례가 있는 경우, 그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하천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관리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3년 단위의 하천 정비·준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내 하천의 위험도·유량·퇴적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침수위험 또는 반복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하천 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3. 하천 유속 저하 또는 퇴적물 누적으로 인해 수위 급증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판정을 받은 지역

② 하천관리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준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청이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정비대상하천의 지정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기적 준설의무) 하천관리청은 퇴적물 제거 및 수위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 하천 준설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정비·준설을 위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천 정비·준설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천 정비·준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행점검 및 보고)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청의 하천 정비·준설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명령)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 하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계획을 미이행한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